

	성희롱·성폭력예방과처리에 관한 규정	규정번호	3-6-3
		제정일자	2001.03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 (인권센터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산대학교의 총장(이하 “총장”이라 한다)이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, 모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말한다.

1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<신설 2023.03.01.>
2.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연구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<신설 2023.03.01.>
3. 1호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<신설 2023.03.01.>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폭력”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구성원(학생, 교원, 직원)과 그 외 안산대학교와 소속기관에 의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으로 복무감독을 받게 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총장의 책무) 총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) ① 인권센터장은 매년 연 초에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가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교육,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성희롱·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.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5.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③ 신입생 및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하거나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권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

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3.01.>

제6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,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③ 성희롱·성폭력행위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총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당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성희롱·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

제7조(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소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대학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소(이하 “고충상담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총장은 고충상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,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③ 고충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고충상담소 업무) ① 고충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요청
3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및 조정
4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
5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

② 고충상담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.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 한다.

제9조(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원활한 사건처리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학생성공처장이 되고,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제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(징계요구, 합의중재, 기타 처리결정 등)
 4. 피해자 보호 및 법률적 구제에 필요한 지원 결정
 5. 관련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충상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처리절차

제10조(고충의 신청) ①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고충상담소는 피해신고 또는 고충신청을 받는 즉시 상담,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고충상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생성공처장에게 즉시 보고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고충상담원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상담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⑤ 학생성공처장은 조사과정에서 당해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학생성공처장은 제3항에 의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징계 및 제재조치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처리에 요청된 사건을 직접 조사·중재할 수 있으며, 당해 사건이 제 2조에 규정된 성희롱·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.

1. 피해자에게 민·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
2.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, 규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
3. 대학 규정 및 학칙에 징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징계양정을 정하여 총장에게 징계 요청
4.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, 봉사, 배상 등의 중재행위
5.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처벌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

6. 가해자가 사건의 조사 개시 전 또는 처리가 종료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처벌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
7. 성희롱·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제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
8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 <신설 2023.03.01.>

제13조(재발방지 조치 등) ① 성희롱·성폭력 행위를 방조하여 행한 자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

② 위원회는 가해행위 후 가해자와 음모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심의결과, 피신고자에게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상담실에 신고하거나 교내·외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총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서전환,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⑥ 총장은 대학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